

사례중심의 공정거래법 해설

-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 제한 -

이병주 / 공정위 국장(국방대학원 파견)

1. 제도의 의의

국제계약이란 당사자 및 내용이 국제적인 것으로서 당사자의 일방이 외국사업자이며 또한 계약내용이 우리 나라와 외국간에 기술·물자·자금 등을 국가간에 이동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32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적 협정이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금지된다. 국제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불공정한 계약조건들이 국내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당해 국제계약의 내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국제계약의 체결이 인정된다.

부당한 국제계약체결제한제도는 행위자가 외국사업자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 공정거래법의 집행관할권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당해 행위의 상대방인 우리 나라의 사업자를 피심인으로 하여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2. 제도의 내용

시행령 제47조는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국제계약의 종류로 7가지 국제계약을 규정하고 있다.

①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과 같은 산업재산권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도입하는 계약(산업재산권도입계약), ② 서적·음반·영상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저작권을 도입하는 계약(저작권도입계약), ③ 영업비밀 기타 이와 유사한 기술에 관한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도입하는 계약(노하우도입계약), ④ 가맹사업의 형태로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상품·용역의 제공 또는 사업경영의 지도를 목적으로 가맹사업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도입하는 계약(프랜차이즈 계약), ⑤ 공동연구개발협정, ⑥ 상품의 수입이나 용역의 도입에 관하여 계속적인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수입대리점 계약으로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수입대리점계약), ⑦ 합작투자계약 등이다.

국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요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요청서와 함께 당해 계약서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48조 제1항 및 제2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심사요청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에 위반된다고 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련계약조항을 수정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시행령 제48조제4항).

국제계약내용이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그 내용 뿐만 아니라 경쟁에 미치는 효과, 계약기간, 관련시장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법 제32조제2항에 의거 『국제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규정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국제계약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계약의 취소, 계약내용의 수정·변경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법 제34조).

3. 부당한 국제계약의 유형

『국제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유형 및 기준』에서는 국제계약 종류별로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예시하고 있다.

산업재산권도입계약상 불공정거래행위로 외국의 산업재산권자가 국내 산업재산권 도입자에게 부품 등의 구입처나 수출지역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계약제품의 판매상대방이나 거래수량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계약제품의 거래방식이나 재판매가격을 지정하는 행위, 경쟁제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 등 15개 유형을 예시하고 있다.

프랜차이즈도입계약상 불공정거래행위로 7개 유형을 예시하고 있다. 가맹사업자의 최고판매량 설정 등 거래수량을 제한하는 행위, 가맹점포의 설비구입을 부당하게 강제하는 행위,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범위를 벗어나 가맹사업자의 취급상품이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다.

공동연구개발협정상의 불공정거래행위로 3개 유형을 예시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공동연구개발 이외의 연구개발을 제한하거나 공동개발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기술의 사용이나 실시를 제한하는 행위, 공동연구개발의 성과인 기술을 이용한 다른 연구개발을 제한하거나, 연구개발의 성과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등이다.

수입대리점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로 8개 유형을 예시하고 있다. 부당하게 부품 등의 구입처를 제한하거나 국내판매지역 등을 제한하는 행위, 병행수입을 방해하는 행위, 광고선전비 등 판매촉진비의 규모를 과다하게 정하여 국내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경우 등이다.

합작투자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로 4개 유형을 예시하고 있다. 외국투자가 국내 합작사의 부품 구입처를 부당하게 지정하는 경우, 판매지역이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계약해지나 분쟁에 대한 중재규칙 등이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하게 규정되는 경우 등이다.

4. 위원회 심결사례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계약이 외국사업자와 상호합의에 의한 점을 감안하여 일차적으로 자율적인 시정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간이절차인 시정권고에 의해 주로 시정을 해 오고 있다.

가. 수입대리점계약상 불공정거래행위

(주)코리막스의 부당한 국제계약체결행위가 전형적인 사례이다.¹⁾ (주)코리막스는 이태리의 MARELLA사와 수입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제5.2에서 마레라사가 동의하지 않은 거래처에 대하여 계약제품의 거래를 불허하는 조항과, 제5.5에서 계약제품의 소매가격을 CIF가격에 관세 및 기타 경비를 포함하여 3.4배로 책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및 재판매가격과 관련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부당한 국제계약행위라고 판단하고 문제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할 것으로 시정권고하였다.

(주)케이엔씨의 부당한 국제계약체결행위는 또 다른 사례이다.²⁾ 케이엔씨는 독일의 LIEBHERR EXPORT AG사와 수입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모든 예비부품을 외국사업자만을 통하여 주문토록 하고, 최소구매량을 이행하지 못하면 통지없이 계약을 종료토록 규정하였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부품구입처를 제한하고 최소판매목표량을 강제하는 부당한 국제계약체결행위라고 인정하고 문제조항의 수정 또는 삭제를 시정권고하였다.

나. 산업재산권도입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³⁾

한국중공업의 부당한 국제계약체결행위의 예를 보자. 한국중공업은 '95. 8. 22 일본의 ABB사와 무체재산권 도입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제14조에서 ABB사가 개발한 중요한 개량기술의 경우에 한국중공업이 기술료를 부담하고 사용하도록 하면서 한국중공업이 개발한 모든 개량기술의 경우에는 ABB사는 별도의 기술료를 부담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개량기술이전과 관련한 불공정한 경우로서 부당한 국제계약체결행위로 인정하면서, 문제의 내용을 한국중공업과 ABB사간에 개량기술의 실시권을 상호 균형있게 허용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으로 시정권고하였다.

다. 합작투자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⁴⁾

(주)케이시텍의 부당한 국제계약체결행위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동 사는 미국 Advanced Delivery & Chemical Systems, Inc(ADCS사)와 '95. 5. 8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ADCS사와 서면으로 합의되지 않는 한 합작회사가 생산한 제품의 판매지역은 한국으로 제한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합작회사의 판매지역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경우로서 부당한 국제계약체결행위라고 인정하고 문제 조항을 수정할 것으로 시정권고하였다. **공정**

1)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1996. 9. 25.

2)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1996. 9. 25.

3)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1996. 1. 29.

4)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1996. 1. 29.

* 다음 호(제54호, 2000. 2)부터는 공정위 하도급2과 서영호 사무관의 "알기 쉬운 하도급법 해설"이 이어집니다.